

목어

부처님이 오신다면

머나 먼 오지에서 손님 한 분이 오셨다. 어리둥절하며 사방을 두리번거리는 그의 모습은 언뜻 보기에도 어느 촌로와 다름없이 보인다. 발등 숲 사이로 줄달음질치는 자동차의 울림, 사람들도 뚱그리게 하나 같이 비껴나. 고약한 매연이 목과 코를 덮쳐온다. 숨쉬기조차 만만치 않다. 하늘을 올려다 본다. 갯빛 하늘이 머리를 감싸고 있다. 몸치장을 진득 한 사람들, 그들의 마음치장이 공금하다. 가계마다 신더머처럼 진열된 갖가지 화려한 상품들은 사람들의 기호와 편의를 충족시키기 위해 별 부족함이 없어 보인다. 그러나 그의 얼굴에는 신기한 감동보다는 쓸쓸한 한숨이 스쳐 지나간다. 자세히 살펴보니 그의 사려 깊은 눈빛과 행동거지가 예사롭지 않다. 마치 사람됨 마음 속을 다 꿰뚫어 보는 듯하다. 삶에 시달리고 번뇌와 고독에 젖어 있는 진면목들을.



다시 눈을 돌려보니 교회의 십자가가 즐비하게 시야에 들어온다. 인자가 이렇게 발달했으면서도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신의 노예를 자처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는다. 이 깊고도 끈질긴 어리석음과 어둠의 끝은 어디인가? 현대는 중독의 시대다. 종교에 중독되고 탐욕에 중독되고 게임에 중독되고 비행과 사악함에 중독되어 살고 있다. 염불소리를 따라 사찰에 들어선다. 부처님 오신날 준비로 어수선하다. 한편에선 연등을 달라고 소리친다. 3만원 짜리, 5만원 짜리가 잘 팔린다. 욕망의 다스림을 가르치기보다는 그 충족을 위해 중생들과 아합하고 있다. 그는 쫓기듯 사찰 문을 나선다. 부처님 오신 날 나는 무엇을 할까? 그는 어려운 이가 있는 곳에 찾아가는. 그들의 손발이 되어주고 마음의 벗이 되어준다. 그들에게 참진리와 그에 걸맞은 삶을 말해준다. 좋은 자동차를 끌리며 좋은 주지자리를 찾아 헤매는 승려를 못 본체 지나쳐 참수행자를 찾아가 격려한다. 부처님이 오신다면 나는 너무 부끄러워 그분을 도저히 친견할 수 없을 것만 같다. 아마도 이미 왜 깨칠지도 모른다.

도수 (정업도량 회주 · 본지 논설위원)

종교 상호존중 원칙 확립 기대

종교편향법적대응의의

1998년 종교편향대책위 발족 이후 최근까지 발생한 방화 및 훼손, 군, 교육·공직, 국제·이웃종교, 방송·언론분야의 종교편향사건은 사찰방화 8건, 훼손사건 10건, 탕화도난 3건, 군부대 훼손 4건, 교육및 공공기관 종교편향 12건, 방송·언론 5건, 종립대 훼손 3건, 운송기관 1건 등 공식적으로 집계된 사건만도 총 46건 이른다. 교계 언론사에 접수돼 개별적으로 해결해 온 사건까지 합하면 3년간 100여건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 동안 교계는 종교편향사건이 명백한 위법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종교간 갈등 심화로 비춰질 것을 우려하여 법적 대응보다는 항의 성명, 항의 방문 등 소극적인 대응과 기관장의 사과문 발표, 해당자 징계 선에서 사건을 마무리 해 왔다.

종교편향사건 공동변호인단의 구성은 향후 사건 발생 시 소송 제기 등의 법적인 대응을 통해 편향사건 재발 방지 및 원천 봉쇄의 효과도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특히 종교편향과 관련한 판례가 남을 경우 다원주의 사회에서 종교간 화합과 신앙활동의 상호 존중원칙도 지켜지는 사회적 흐름변화도 예상된다.

종교편향대책위원회의 소송을 통한 근본 해결책 마련 방안은 외국 특히 미국의 사례처럼 합법적인 방법으로 종교편향사건을 근절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 모색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헌법에 명백히 종교의 중립성과 개인의 종교 자유 침해 근거규정이 마련돼 있지만 실제로 소송까지 가는 경우가 없어 시정되지 않았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소송을 통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국민들에게 간접적으로 교육시키는 계기가 된다는 것이다. 이런 공익소송은 사회를 변화시키고 인식을 높이는 사회개혁운동으로도 받아들여지고 있다. 소송에 다른 판례가 축적될 경우 종교편향 방지법과 같은 법률제정 운동도 일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 종교의 자유와 그 범주
우리나라의 헌법은 제20조에서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국교는 인정되

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않는다' 라고 하여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종교의 자유는 개인의 마음 작용인 신앙, 종교적 행사, 종교적 집회 및 결사, 포선 교합동 등을 행할 수 있는 적극적인 자유와 무신앙의 자유, 종교적 행사 및 종교적 집

지금까지

최근 3년새 훼손 1백여건 항의 성명·방문 등 소극 대처

앞으로는

법적 근거 마련 원천봉쇄 '종교편향 방지법' 제정 추진

회·결사 또는 선교활동 등을 강제받지 않는 소극적 자유를 뜻한다

법에 규정된 종교의 자유에 따라 개인은 신앙문제에 관하여 외부로부터 강제를 받지 않고 신앙선택의 자유, 개종 자유, 무신앙의 자유, 신앙고백의 자유, 자기가 신앙하는 종교를 외부의 강제에 의하여 표명하지 않을 자유가 보장된다. 이런 의미에서 어떠한 경우나 개인에게 강제적으로 종교를 권유하거나 강압적으로 종교선택을 강요하는 등의 행위는 법에 저촉되는 행위이다.

하지만 헌법은 마음의 작용을 의미하는 신앙의 자유만 제외하고, 국가 안전보장



종교편향사건에 대해 법적으로 대응하면 종교간 상호존중의 원칙을 세울 수 있다. 사진은 군내 종교사건에 항의하는 중앙승가대 학인들의 시위 모습.

질서유지·공공복리를 해치는 경우에는 종교행사, 종교집회, 종교결사, 포(선)교 및 종교교육은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

● 빈도 높은 사례 연구

교육기본법 제6조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학교에서는 특정한 종교를 위한 종교교육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이 있다. 따라서 교육기관의 학교장이나 교사는 특정종교를 지지하는 일이나 행동, 특정종교의 교리를 가르치는 행위를 하면 안 된다.

그동안 교계에 신고된 10여건의 교육 관련 종교편향 사건의 경우 교사가 학생들에게 성경책을 나눠주고, 수업시간에 성경구절을 읽게 하거나 하면 유인물에 성경문구 삽입, 불교교리 모독, 스님 비하 등이 주를 이룬다.

이런 경우 교육기관에서 종교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의무를 위반했고, 학생의 종교적 자유를 침해한 만큼 헌법상 종교의 자유 보장과 교육기본법상의 이유로 소송이 가능하다. 또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도 가능하다.

소송을 제기할 때 종교의 자유를 침해당한 학생의 학부모와 종교편향대책위가 공동으로 원고단을 구성하고, 피고는 해당 학교장과 교사 그리고 사립학교는 학교법인, 국·공립학교는 정부가 된다.

김원우 기자(wwkim@buddhapia.com)

종교편향 대응 미국에선

'종교자유' 소송 판례 수백건

회교권 국가를 제외한 세계 대부분의 국가가 '종교의 자유'를 헌법에 명시해 놓고 있다. 종교의 자유와 관련한 소송이 가장 활발한 나라는 미국이다. 미국에는 종교의 자유 침해로 인한 판례가 수백 건에 달한다.

미국 연방대법원의 경우 교육기관이나 공공기관이 연루된 종교 편향사건을 판단할 때 사용하는 테스트 기준은 세 가지이다. 첫째, 정부의 행위가 세속적 목적을 가져야 한다. 둘째, 정부행위의 주된 효과는 종교를 촉진하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 셋째, 정부행위는 지나치게 종교 행위와 얽매이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배금자 변호사가 저술한 <간간을 위한 법정>에 수록된 종교의 자유와 관련한 미국의 실례를 보면 다음과 같다.

학교에서 기도 못한다

펜실베이니아주는 50년대 후반에 공립학교 학생들에게 날마다 수업 전 성경을 낭독토록 했다. 성경낭독을 거부하는 학생의 경우 학부모의 요청서를 제출하면 면제되었지만, 소리는 방송시설을 통해 학교 전체에 들렸다.

예수를 인정하지 않는 이 학교의 유대인 학생들은 성경낭독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또 메릴랜드주에서도 비슷한 소송이 무종교인들에 의해 제기됐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성경낭독이 세속적인 것이 아니라 종교적인 것이며, 그 효과 또한 종교를 신장시키는 것이라 판단하고 헌법상 종교교과 금지조항에 위배된다고 판결했다. 이후 앨라배마주에서 시행한 1분간의 침묵시간도 입법과정에서 불 대 종교를 지지할 우려가 있다며 금지판결을 내렸다.

쇼핑센터의 크리스마스 트리와 아기예수 장식

로드아일랜드에 있는 포터켓시는 해마다 쇼핑센터 한가운데 위치한 공원에 크리스마스 장식물을 설치해왔다. 트리에는 '산타클로스' '순록'이라 새겨진 글자판을 장식했고, 그 중에는 종교적 상징인 아기예수 탄생 장면도 포함했다. 이에 대해 포터켓시의 시민권단체인 ACLU 회원들은 1980년 크리스마스 장식물이 종교교과금지 조항에 위배된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연방 대법원은 합리적인 관찰자가 그 전시물을 볼 경우 정부가 종교적인 혹은 어느 특정 종파의 메시지를 지지하고 있다고 믿게 된다면 이 장식물은 종교교과 금지조항에 위배된다고 판결했다.

현대불교·붓다뉴스·부다피아

종교편향 제보 받습니다

현대불교신문사는 헌법상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종교편향사건 접수창구를 개설합니다.

종교편향사건은 다원주의 사회에서 개인의 종교적 자유를 침해하는 명백한 위헌행위입니다. 현재 전국 곳곳에서 벌어지는 종교편향사건은 이부 헤아리기 힘들 정도로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개인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는 국민들을 이간시키고, 사회를 혼탁하게 하는 중대 범죄입니다.

본사에서는 종교편향사건의 중대성을 사회에 이슈화하여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고 종교간 상호존중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방침입니다.

특히 종교의 자유 침해가 빈번하게 이뤄지는 교육기관이나 공공기관에서 이뤄지는 종교편향내용을 제보하여 주십시오.

현대불교 편집국 02)722-4162

www.buddhanews.com, www.buddhapia.com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장 : 노대행 1994년 10월 15일 창간
발행·편집인 : 김광삼 등록번호 다 3379
대표전화 02-737-8881
인쇄인 : 김규석 02-737-8881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인터넷 日刊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정보센터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불교소평 '마하물' www.mahamall.co.kr
온라인서점 '여시아문' www.yosiamun.com

편집국 (02)722-4162 FAX (02)737-0698
광고국 (02)732-1522 FAX (02)737-0697
구독신청·배달안내 (02)737-0090
서울시 중로구 견지동 110-33 ☎110-170
구독료: 1개월 4천원 1년 4만원 영구 50만원

부처님 오신날



홍천시 대구 포교원 철야기도

매월 음력 23일 오전 10시 부터 24일 낮 12시 까지
매주 화·수 기도법회(오전 10시 ~ 오후 5시 까지)
Tel. 053) 635 - 5932

홍천시는 음력 매달 1·15일 철야기도법회

- ◆ 명예회장 : 원태성, 채태선, 박재학
- ◆ 신도회장 : 이영자, 박정미
- ◆ 부회장 : 강시연, 문선하, 장경화, 이용조, 지정숙, 최미애
- ◆ 총무 : 오미야

세계오백불, 극락도량 및 부처님 진신사리 봉안불사 중



수안보
문경새재 (3번국도)
조량 3관문
홍천사
소서는 길

문경새재 조령산 홍천사 주지 동봉 합장

충북 괴산군 연풍면 원풍리 48번지 Tel. 043) 833 - 5525